

2013년 6월 29일 시행

# 제19회 법무사 제1차시험

## <제 1 교시>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0문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3. 6. 29.(토) 19: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3. 7. 1.(월) 12:00 ~ 2013. 7. 3.(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3. 7. 18.(목)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헌 법 20문】

【문 1】 감사원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소관 업무로 한다.
- ②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④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거나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는 없다.

【문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 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⑤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3】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며,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 ②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 ③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의 상신신청을 받은 후 스스로 그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한다.
- ④ 복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 형의 선고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 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 4】 대법원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헌법법령을 기준으로 함,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 ②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
- 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심급제도 자체는 헌법상 필수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재판이 3심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5】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⑤ 행정기관이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문 6】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대학의 자율의 규율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 ② 대학자치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나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 ④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
- ⑤ 법률조항이 대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문 7】 국민투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 ②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의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를 부의한 대통령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⑤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은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단한다.

【문 8】 기본권의 충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 ②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③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 ④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들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기본권 서열이론을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
- 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흡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문 9】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 ① 헌법재판소장의 정년 연장
- ② 법관의 임기 연장
- ③ 지방의회의 폐지
- ④ 대통령의 피선거연령을 만 35세로 인하
- ⑤ 감사위원의 임기 연장

【문10】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현행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②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문11】 헌법소원의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여기서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③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⑤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문12】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당구장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자판기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의 원리상 감수되어야 할 것이다.
- ④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방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 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납골시설의 설치·운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문13】 이중처벌금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이중처벌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즉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뿐만 아니라,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 모두가 그 “처벌”에 포함된다.
- ⑤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문14】 알 권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이유로 동 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 ③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
- ④ 수용소에서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를 삭제하더라도 알권리를 과잉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공직선거 후보자 중 일부인 소위 주요 후보만을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공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15】 현행헌법에서 정당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 ② 정당은 그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③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문1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③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④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17】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률의 위헌 결정
- ② 탄핵의 결정
- ③ 정당해산의 결정
- ④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결정
- ⑤ 중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문18】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 ②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의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④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 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 자체의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19】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
- ③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문20】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 ②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법률이 처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죄형에 관한 법률조항이 그 내용을 해당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의 문제인 동시에 포괄위임입법금지 여부의 문제가 된다.

## 【상 법 30문】

【문21】상업등기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위 항과 같다.
- ③ 상업등기에는 일반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라도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22】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②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④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문23】영업양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③ 위 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 ④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24】 다음 중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아니한다.
- ② 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다.
- ③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에게만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도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문25】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화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격지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 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
- 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매수인에게 있다.

【문26】 다음 중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②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④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 및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⑤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문27】 다음 중 상법상 중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법상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중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 ④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⑤ 중개인은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28】 다음 중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③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 ④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29】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분양회사 갑이 건설회사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②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갑이 을이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는 도중 호텔 종업원 병이 갑의 휴대 물건을 과실로 일부 훼손한 경우에 발생하는 갑의 을에 대한 상법 제152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을이나 병이 악의가 아닌 한 갑이 그 물건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상인이 아닌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상인이 아닌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장래 설립될 주식회사가 상법상 상인이어서 갑의 상행위가 되므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⑤ 상인인 갑이 상인인 을과 상사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배상채권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30】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면 따로 금융리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 금융리스업자는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 ⑤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금융리스업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문31】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 ②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③ 사원의 책임은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④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데,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문32】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 ②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문33】사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④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전환사채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문34】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④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 ⑤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면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35】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위 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위 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위와 같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⑤ 법령에 위반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문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③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문37】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발기인은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③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
- ④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받기로 한 신주인수 우선권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이 납입했던 납입금의 반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문38】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는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총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하였다면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위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
- ③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전부 면제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 ⑤ 이사는 그 대리인에게 이사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문39】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대표이사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주식회사가 갑, 을 2명의 대표이사를 두면서 공동대표이사로 한 경우 갑, 을은 공동으로만 대표행위를 할 수 있고, 회사의 거래상대방도 갑, 을 2명에 대하여 모두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④ 갑이 을 회사 모르게 임의로 을 회사의 사장으로 행세한 경우에도 이를 신뢰한 제3자인 병에 대하여는 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문40】 다음 중 주식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 ② 회사가 그 성립 후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문4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지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 ④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지만,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
- ⑤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양도인의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양도인의 협력이 있어야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문42】 주주총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룰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하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적법하게 철회된다.
- ③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⑤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문43】 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이를 이른바 유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유통어음을 발행한 유통자가 스스로 유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유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유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유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④ 어음상의 채무를 보증한 자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 ⑤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문44】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어도 이 약관은 유효하다.
- ③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 ④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문45】 손해보험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라도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④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문46】 다음 중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표에 지급지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항상 그 수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 ④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 ⑤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구를 적었다면 그 수표는 무효로 된다.

【문47】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하거나 그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③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관하여 상법 제395조가 정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한다.
- ④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 ⑤ 상법 제395조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문48】 다음 중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얻지 못할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 ②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 ③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위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피보험자의 사망)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다.
- 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문49】 선박소유자에 대한 다음 채권 중 상법 제769조에 의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 ①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 ②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 ③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 ④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⑤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문50】 어음의 배서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서에 붙인 조건은 유익적 기재사항으로서 유효하므로, 일부에 대한 배서 역시 가능하다.
- ②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 ③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 ④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 민 법 40문 】

【문 1】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5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 ②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 ③ 매매계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주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 ⑤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문 2】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약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약의 효력이 있다.
- ②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 ③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도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④ 금전채무와 같이 금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 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약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문 3】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을 대리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③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문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파트 분양자는 인근에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분양시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 ②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 ④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 5】 친생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라도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④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⑤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 약정이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의 경제력의 차이로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⑤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문 7】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조부로부터 부담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 ②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은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이 근로계약체결을 대리하여야 한다.
- ③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는 없지만 승인할 수는 있다.
- 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만 16세는 되어야 한다.

【문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 ②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는 것이지만,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 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문 9】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체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따라서 마치못해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입증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계약은 물론이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⑤ 표의자의 강박에 의하여 내심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된다.

【문10】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나,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들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②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데, 그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설정의 전, 후를 불문한다.
-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문11】공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②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③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간의 특약은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 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문12】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수목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 ④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 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게 된다.

【문13】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 ④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문14】유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 ②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③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데, 유언자는 이러한 유언 철회권을 생전에 포기할 수도 있다.
- ④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이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문15】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권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권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④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그 설치비용은 소유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문16】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침탈당한 물건을 회수하더라도 그 점유권은 소멸한다.
-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③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폭력에 의한 점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점유권은 본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항변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17】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 ②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 인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채권으로 전환한다.
- ③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그 환산시키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가 아닌 이행기이다.
- ④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⑤ 선택채권에서 선택의 효력은 선택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문18】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체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 ④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 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19】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②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 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③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법무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절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 ⑤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20】 매매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②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 ③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평당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그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 ⑤ 신축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책임지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물론 당초의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문21】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인 이상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한다.
- ④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문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 ⑤ 법률행위의 취소에 있어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까지 유추적용될 수 없다.

【문2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②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점포를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면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점포 영업이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에는 건물의 차임은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부지 부분의 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건물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 ⑤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24】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 ②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③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
- ④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이전을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에 불과하므로, 취득자는 중전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중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25】 이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의 계속중 배우자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이를 수계하여 그 소송의 종료를 막을 수 있다.
- ②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그 분할에 고려할 수도 있다.
- ④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것은 아니다.

【문26】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②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 ③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 ④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변경되었다면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 ⑤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27】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 ③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④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문28】 사용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용대차계약에 있어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민법 제614조는 사용차주가 사망한 경우 사용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 사용차주 본인이 사망하면 사용대주는 사용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곧바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용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공평의 입장에서 사용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사용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사용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문29】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
- ②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을 진다.
- ③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④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이 있다.
- ⑤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문30】 변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변제할 수도 있다.
- ②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③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 ④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31】 혼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
- ②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 ③ 따라서 제2차 부양의무자인 어머니가, 수술 후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있는 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하여 왔다면, 제1차 부양의무자인 그 아들의 처에게 자신이 지출한 병원비 등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처는 자신이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 ④ 위와 같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⑤ 한편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32】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②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 ③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므로,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행위 시점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문33】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②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④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 ⑤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3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②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③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보전행위는 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3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하고 보통의 계약에서와 달리 최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 ③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의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다른 당사자에 관하여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36】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 ②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 ④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을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상속인들은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문37】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③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는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문38】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②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
-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⑤ 미등기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문39】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②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 ③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데 따른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40】 친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 ②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③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 ④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한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10문】

【문41】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를 요약한 것이다. ( )안에 차례로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한 이하 [문50]까지 같음)

〈 다 음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 )이(가) 관장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 )이(가) 부담한다.

-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② 시(구)·읍·면의 장 - 지방자치단체
- ③ 대법원 - 국가
- ④ 국가 - 국가
- ⑤ 대법원 - 지방자치단체

【문42】 혼인신고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외자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존속하면 되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수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외자를 철회하고 이미 제출된 신고서류의 반력을 요청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혼인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 ②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나, 중혼이라도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신고의 성격에 대하여 다수설은 보고적 신고로 이해하나 판례는 창설적 신고로 본다.
- ④ 혼인신고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는 없으나, 혼인당사자 쌍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사자(使者)를 시켜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다.
- 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재판을 청구한 자의 상대방은 이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문43】 사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으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나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은 할 수 없다.
- ④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문44】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작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외자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 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도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는 제작성 사유 중 하나이다.
-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별실고시 이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제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되어 이를 제작성하는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④ 가족관계등록부 제작성시 이기범위는 별실고시의 사유로 제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 ⑤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제작성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문45】 다음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장소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에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이혼외자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외자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외자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외자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46】 다음은 각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일부사항증명서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연결하고 있는데 제외사항이 아닌 것이 연결된 것은?

- ① 가족관계증명서 - 전혼 중의 자녀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외의 자녀
- ③ 기본증명서 - 국적취득
- ④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취소
- ⑤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

【문47】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 ④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48】 인지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상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부상의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 ② 사망한 자(子)에 대하여는 비록 그 자(子)에게 직계비속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를 할 수 없다.
- ③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 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지할 수 있다.
- ④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⑤ 인지는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문4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감독법원의 허가는 소송법상의 법원(판사)이 행하는 재판이다.
- 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 ③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대법원에 규로 정한 경우는 없다.
- ④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 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사건의 신고인에 한하여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문50】 신고서류의 열람 및 신고서류에 관한 증명서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제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성립증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나 그 신고에 따른 혼인사유가 기록된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고 혼인신고 접수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 ② 신고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의 수리증명서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신고가 불수리된 경우 신고의 불수리증명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신고인에 한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전산화가 완료된 이후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일지라도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종전의 호적(제적)부분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관할 감독법원에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감독법원에서 신고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은 감독법원에 신고의 수리증명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2013년 6월 29일 시행

# 제19회 법무사 제1차시험

## <제 2 교시>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50문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50문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3. 6. 29.(토) 19: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3. 7. 1.(월) 12:00 ~ 2013. 7. 3.(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3. 7. 18.(목)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가집행선고 있는 중국판결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 경매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라도 담보제공은 집행개시요건이므로 담보를 제공하기 전이라도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
- ③ 가집행선고 중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실제로 채무자가 위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없다.
- ④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중국판결은 즉시로 집행력이 발생한다.

【문 2】재산명시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명시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되는 것이 아니어서 강제집행의 착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 ②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고,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 ③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할 수 없으나, 교부송달 외에 보충송달, 유치송달은 가능하다.
- ④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⑤ 채무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문 3】다음 중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권발행 전의 주식으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선박의 공유지분권
- ③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④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공유지분권
- 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권

【문 4】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前)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 또는 불수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 집행에 관한 이의는 할 수 없다.
- ④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 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문 5】집행당사자적격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 ②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달리,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
- ④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않는다.
- ⑤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원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문 6】다음 중 독립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 ① 부동산환매권
- ② 지상권의 공유지분
- ③ 지역권
- ④ 저당권
- ⑤ 공동광업권자의 지분

## 【 제3과목 50문제 】

## ①책형

【문 7】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 ② 채무자가 집행채권 전액을 변제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공탁서를 제출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 후에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정본이 제출되더라도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 ④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강제경매신청의 집행권원이 된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으면 그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문 8】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만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아니다.
- ②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면 그를 상대로는 배당이이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배당이의를 한 경우,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이의 소를 제기하고 그 제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이이는 취하간주된다.
- ④ 서면으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이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제3자는 배당이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9】 집행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 ① 매각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 부동산 인도명령에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 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집행에는 조건을 붙인 경우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 ③ 강제집행 수탁문구가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④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라도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10】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 ①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도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
-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도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③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강제집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항변도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④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그 상계항변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 ⑤ 상속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그 사실을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따라 한정승인 사실을 청구이의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문11】 집행보조절차인 재산조회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한 것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토지·건물에 관한 재산조회외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 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③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의 법원으로 지방법원과 지원만을 의미하므로 시·군법원은 제외된다.
- ④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문12】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인용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이고, 신청을 배척(기각·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② 판단의 기준시는 보전처분시이고, 이의사유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까지의 사정만이 판단자료가 된다.
- ③ 보전처분의 소송대리인은 이의소송에서도 그 지위를 유지한다.
- ④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특별사정의 존재 및 제소기간의 도과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⑤ 이의신청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문13】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법원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증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그 선행절차가 취소되면 매각물건명세서상의 기재사항(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으로 속행할 수 없다.
-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이고 그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신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최선순위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 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가 된다.

【문14】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의신청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문15】보전처분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전처분의 토지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
- ③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1심 법원이다.
- ④ 본안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대법원도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⑤ 보전처분신청 후 본안이 관할위반으로 이송된 경우 보전처분신청도 관할위반이 된다.

【문16】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촉탁서는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기입된 국세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고, 그 압류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기입등기 이후의 가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③ 말소될 저장권에 관한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촉탁할 필요가 없다.
- ④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⑤ 구법에 의하여 마쳐진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예고등기제도 자체를 폐지하였으므로 함께 말소촉탁하여야 한다.

【문17】법정지상권과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365조의 저장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장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권설정자로부터 저장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장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장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는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 ③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장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장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장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일괄매각대금 중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⑤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의 저장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18】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직권으로 등재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명부 등재 후에 등재결정의 취소, 등재신청의 취하,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의 등재말소신청이 있으면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가 변제,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로 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⑤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문19】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② 매수보증인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판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③ 재매각절차에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란 재매각기일의 전 날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재매각기일이 3월 11일이면, 3월 10일부터 역산하여 3일이 되는 날인 3월 8일이 이에 해당한다.
- ④ 전매수인이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인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배당받아야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신고는 부적법하다.

【문20】 부동산의 이중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 ② 이중경매신청은 선행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 ③ 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행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고, 후행 경매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이중경매의 경우 납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경매개시결정의 선후를 불문하고 경매신청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 ⑤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선행 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후행 절차에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문21】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적 청구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강제경매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면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임의경매의 경우 이러한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에 한정되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경우 절차상 하자 외에 실체상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이 개시결정 이후에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하면 족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 ④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나, 임의경매에서는 그러한 절차 없이 절차가 속행된다.
-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달특례는 임의경매절차에만 적용되고 강제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2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농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할 때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매각허가결정을 할 때까지는 위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외국인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그 취득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토지가 아니라면 매수신청을 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
- ③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임의경매에서 물상보증인이나 매각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문23】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빠뜨렸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 ②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은 전체 부동산의 평가액을 채무자의 지분비율로 나눈 가격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공유자의 채무자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⑤ 공유자가 채무자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 【 제3과목 50문제 】

## ①책형

【문24】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집행권원이 된 채권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으로써 소멸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각허가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사유가 되지 못한다.
- ②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대리인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때에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된다.
- ④ 첫 최저매각가격 결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사유가 되지 못한다.
- ⑤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될 가망이 없음에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채무자는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2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기일과 배당기일 등을 통지받을 권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된다.
- ② 경매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담보가등기이든지, 소유권 이전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든지 불문하고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등기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 ④ 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마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⑤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에 관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유치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문26】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이 아직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무효이고, 전부채권자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③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지만, 그 채무변제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④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의 소멸, 즉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피전부채권 전부를 압류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문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 ③ 압류명령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는 없다.
- ④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 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문28】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순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면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 없다.
- ②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고, 이 집행기간은 공익적 규정으로 법원이 임의로 신장할 수 없으며, 채무자도 기간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 ③ 일정한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 의무이행 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작위의무 불이행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할 것은 아니다.
- ④ 부대체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효력을 없애려면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29】채권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령된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다.
- ③ 공탁자가 담보로 공탁한 공탁물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그 담보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기 전에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그 담보취소결정 전에 발령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문30】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압류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우라도 추후 집행관이 이와 같은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면 그 흠은 치유된다.
- ③ 등록대상이지만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는 유체동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 ④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이는 압류할 수 있으나, 한국은행의 국고금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전은 이를 국고금압류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⑤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중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한다.

【문31】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경우,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가압류취소 사건은 항소심 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
- ②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의 경우, 이해관계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본다.
- ④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2회 불출석으로 그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가압류취소신청인은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를 소명함으로써 족하다.

【문32】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권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 ③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는 경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국유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공유물분할의 소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래에 취득할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관한 소유권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허용된다.

【문33】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외국통화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통화로 환산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야 한다.
- ②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 ③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④ 중재합의가 있어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문34】다음 중 경매법원이 배당표에 정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② 배당받을 채권에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 ③ 배당받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 ④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
- ⑤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문35】다음 중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 ①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②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 ③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전세권자
- ④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②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다.
- ③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신분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와 구분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⑤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접수인을 주말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문37】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소멸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 ③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④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인감제출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원일과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38】 다음 중 비송사건절차법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따른 재판상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②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인가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③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상무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④ 상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⑤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문39】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그 등기의 신청과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그 신청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④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그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40】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 ④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문4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가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점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③ 사전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
- ④ 본점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분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촉탁을 한다.
- ⑤ 본점에 지배인을 둔 회사가 관할의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와 본점이전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문42】 비송사건절차법상 심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 ③ 상법 제432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신청사건의 심문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민법 제593조에 따른 환매권 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⑤ 법원은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문43】 대표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 ①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일부 이사는 단독대표이사로, 일부 이사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 ② 결원된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일시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된다.
- ④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관리인 선임등기를 할 때 대표자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이사 취임등기 등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

【문44】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 ④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동일한 개인상인이 동일한 등기소 내에 각 상호별로 영업을 상이하여 여러 개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상호별로 등기기록이 편제된다.

【문45】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할의 본점이전등기 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할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분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 ⑤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문46】 유한책임회사와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유한책임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업무집행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동시에 설립등기사항에 해당한다.
- ③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작성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사원의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 ⑤ 대표업무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문47】주식회사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
- ②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 ③ 회사가 정관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이사회결의로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일, 주주총회결의로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 2주간 내에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문48】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환권이 회사에게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주주전환주식의 전환의 효력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고, 회사전환주식의 전환의 효력은 회사의 통지 또는 공고에 따른 전환주식의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발생한다.
- ③ 어느 달에 수회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행사일이 속하는 말일을 기준으로 1건의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 ④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서를, 회사가 주식을 전환한 경우에는 상법 제346조 제3항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전환으로 소멸되는 주식수와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의 비율이 1:1인 경우와 1:1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1:1 미만인 경우에도 주식의 전환이 인정된다는 것이 등기실무의 태도이다.

【문49】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② 회사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회사해산명령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합병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 ⑤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50】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③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그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거기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②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

【문 2】 다음 등기신청의 각 사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그 등기명의인이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⑤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문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계약서 등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서 정본인 때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 4】 학교법인 등의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③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④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위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 ③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지 않고서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문 6】 등기신청서 또는 부속서류의 작성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청서가 여러 장이어서 간인을 할 경우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반드시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 ②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신청서의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과 법무사의 사인을 같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정정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 ④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간인은 작성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문 7】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②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어느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
- ③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말소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등기관은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④ 갑→을→병의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한다고 할 때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 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등기라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

【문 8】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법인의 직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특별수권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인 자에게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친권자 중 어느 일방이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완료 전에 본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는 유효하다.

【문 9】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송달증명서의 제공은 요하지 않는다.
-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권리자의 것만을 제공하면 된다.
- ④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결이유에 그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등기필정보의 경우에는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10】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③ 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일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는 할 수 없다.
- ⑤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들의 승낙을 얻어야만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문1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저당권(이하 “공장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12】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 ② 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 ③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축탁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 ⑤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문13】 등기관 갑은 을(등기의무자)과 병(등기관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을과 병은 이에 대하여 다투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을과 병이 갑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려면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병의 채권자 정은 등기관 갑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각하결정 후 을과 병이 흠결된 첨부정보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을과 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등기관 갑이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각하결정을 한 등기관이 소속된 등기소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문14】 다음 중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 ①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
- ②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③ 민법상 조합
- ④ 시설물로서의 학교
- ⑤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자

【문15】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공서는 등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②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필정보가 멸실되어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한 언제든지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 ②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공동상속인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동일한 협의분할서를 여러 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 ④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분할심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그 협의를 해제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문17】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 ② 등기능력 없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 ③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 등기된 경우
- ④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 ⑤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진 경우

【문18】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이나 예규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청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서명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등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④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⑤ 신청서등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문19】 근저당권이전 또는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의 일부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20】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등기명의인인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양자는 법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1회의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
- ④ 등기명의인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 ⑤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21】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에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공유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등기의 신청은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③ 갑과 을의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 단독소유를 갑과 을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하다.
- ④ 갑과 을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을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갑과 을의 공유를 갑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지당권설정등기로 하여야 할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할 수 없다.

【문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기관이 위 ①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 ③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④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국세채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⑤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문23】 매각으로 인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집행법원은 제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
- ②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집행법원은 상속인이 아닌 매수인(피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만 하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촉탁할 필요가 없다.
- ⑤ 집행법원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촉탁하지 않고 매각으로 인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만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문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 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 후에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전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와 관리처분계획서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 ④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있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새로운 토지와 건물에 존속하게 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기된다.
- ⑤ 이전고시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문25】 건물의 등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등기능력이 있다.
- ②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건물의 등기능력에 관하여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은 등기능력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 ④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를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였다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이다.
-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건물도 등기능력이 있어야 한다.

【문26】가등기에 관한 본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와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같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의무자는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된다.
-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로써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27】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 아 래 〉

- 가. 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 다.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 라. 같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과 을의 합유로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 마. 조합의 구성원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유에서 법인 아닌 사단 소유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문28】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용대상 토지가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수용절차의 진행 중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
- ③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 또는 협의의 성립일”을 각 기재한다.
- ④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 ⑤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피수용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29】다음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한다.
- ⑤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30】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1개의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전부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 ③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소유하는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위 ④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공탁법 20문】

【문31】 갑(甲)은 을(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천만원에 기하여 을(乙)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을(乙)은 병(丙)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해방공탁금 2천만원을 공탁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갑(甲)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직접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갑(甲)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병(丙)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갑(甲)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 ④ 갑(甲)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을(乙)은 가압류취소결정 및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⑤ 갑(甲)의 채권자가 '갑(甲)의 을(乙)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을(乙)은 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문32】 다음은 수용된 토지에 대한 공탁물 출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재산에 대하여 토지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함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함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함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공탁금의 소유형태를 함유로 하여 공탁한 이후에 그 함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함유자들은 함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 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함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 이후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은 함유자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매도인(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수용개시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수용개시일 이전에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피공탁자의 승계인으로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문33】 다음은 변제공탁물의 회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만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 ②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저당채무의 공탁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의 공탁수락서가 제출된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더라도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문34】 혼합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
- ② 혼합공탁 신청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기재할 것은 아니다.
- ③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혼합공탁 사유가 아니다.
- ⑤ 채권양도와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 등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문35】 갑(甲)은 피공탁자를 “을(乙) 또는 병(丙)”으로 하여 2천만원을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甲)은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을(乙)에 대한 공탁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공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병(丙)은 을(乙)의 송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다.
- ③ 병(丙)이 갑(甲)을 피고로 하여 얻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 ④ 병(丙)이 을(乙)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소관 공탁관)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을(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통지가 공탁소에 도달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최초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제4과목 50문제 】

## ①책형

【문36】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시·군법원 공탁소에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할 수는 없다.
- ②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③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계좌번호오류로 인하여 납입마감일의 통상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착오납입한 경우 공탁물보관자의 확인이 있으면 언제라도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납입안내문과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문37】 다음은 공탁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류를,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소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38】 피공탁자 지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금전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을 할 때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대한민국’ 또는 ‘국’으로 기재한다.
- ③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수용대상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강제경매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⑤ 갑(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는 후 을(乙)이 갑(甲)의 수용보상금 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병(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피공탁자는 ‘갑(甲) 또는 병(丙)’이 된다.

【문39】 갑(甲)은 을(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시가 위 채권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을(乙)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을(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한 후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면 배당요구중기가 도래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차단된다.
- 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乙)은 고양시가 압류한 채권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거절하고, 갑(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 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기 이전에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문40】 다음은 공탁당사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보관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는 성질상 피공탁자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②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 ③ 변제공탁의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수령권확인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으면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공탁신청행위와 같은 능동적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탁행위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는 경우와 같이 수동적 당사자일뿐인 경우에는 공탁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⑤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41】 갑(甲)은 을(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억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병(丙)의 압류·추심명령(압류채권액 1억원)을 송달받고, 갑(甲)은 압류된 금액(1억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甲)이 1억원을 집행공탁한 때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 ② 갑(甲)은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병(丙)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갑(甲)이 공탁한 후에 병(丙)의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을(乙)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갑(甲)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을(乙)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42】 공탁통지서 발송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공탁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달증명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000)”으로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므로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공탁통지서 송달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 ④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탁자가 집행관에 의한 야간 송달(민사소송법 제190조)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는데, 공탁통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아 공탁소로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문43】 다음은 전자공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 ② 금전공탁 신청사건 또는 공탁액이 금 5천만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스캔을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가)압류명령서 등 처분제한의 서면이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순서대로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

【문44】 다음은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본교부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
- ② 공탁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소송상의 권리를 양수한 자는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수용 대상 부동산의 가등기권자는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따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공탁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문45】 고양시는 갑(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을(乙)의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위 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 ② 민사집행법 제301조에서 가처분의 경우에도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고양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를 ‘갑(甲)’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 ⑤ 위 공탁이 성립된 후에 고양시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문46】 다음은 공탁사항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대공탁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담보물변경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④ 대공탁은 피공탁자도 청구할 수 있다.
- ⑤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유가증권공탁이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47】 다음은 공탁서 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원인사실은 ‘채권자불확지’, 피공탁자는 ‘을 또는 병’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 ②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 후 착오로 압류·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 이를 공탁원인사실에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 ③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공탁서정정 신청이 수리된 때에는 그 때부터 반대급부 없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료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 ⑤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48】갑(甲)은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乙)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을(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5백만원을 공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을(乙)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② 을(乙)은 갑(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 담보권실행에 의한 압류 및 전부를 할 수 있다.
- ③ 을(乙)은 갑(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갑(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④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갑(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한 경우 비록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을(乙)은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다.
- ⑤ 을(乙)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정(丁)과 무(戊)의 압류가 경합된 때에는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문49】다음은 변제공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③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면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무효이다.

【문50】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전부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②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변제공탁에서 당사자간의 합의해결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포기 증명서면이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 된다.
- ④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더라도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